



사람중심 새로운 용인이 바른 공동주택문화 조성에 함께 합니다.

용인시 공동주택 시책사업 (☎1577-1122)

보조금 지원	▶단지내 도로, 놀이터, 시설물 개보수 비용 지원 ▶(금액) 세대 규모별로 1천만원~5천만원 ▶(대상) 준공 후 7년이상 공동주택단지
기술자문 운영	▶시설공사에 대한 분야별 전문가 자문 서비스 ▶(기간) 연중 실시 ▶(자문분야) 토목, 급배수, 전기, 방수, 조경, 통신등
입찰공고 사전검토	▶단지내 공사 관련 입찰공고서 사전검토 서비스 ▶(기간) 연중 실시/ 관리주체 신청 ▶(검토내용) 지침 위반, 과도한 제한 여부 등
'조치좋아' 자문단	▶공동주택관리종사자 인권보호(피해구제) 자문서비스 ▶(기간) 연중 실시 ▶(자문단및내용)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이 조사, 조언, 치유 등을 통하여 갈등 조정, 해소, 상생

『공동주택관리법』에 따른 (구청)신고 업무

입주자대표회의 구성(변경)	▶관련법 : 법 제14조, 제19조 ▶(시기) 구성원 변경 후 30일 이내 ▶(제출서류) ① 시행규칙 별지5호 서식 ②구성 현황표(성명, 주소, 생년월일, 약력) ③선출 증명서류(동대표 선출·당선공고문 / 투개표율 요약서 임원결정 회의록·공고문 / 회장및감사 선출 당선 공고문)
관리규약 개정(변경)	▶관련법 : 법 제19조 ▶(시기) 제정·개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 ▶(제출서류)) ① 시행규칙 별지5호 서식 ②개정 제안서, ③입주자들의 과반수 찬성동의서 ④3단 비교표(준칙, 개정전, 개정후)
행위허가/신고	▶관련법 : 법 제35조, ▶단지 시설물에 대하여 법 제35조에서 정한 행위 (용도변경, 증축, 증설, 철거등)를 하기 전에는 허가·신고를 득하여야 함. ▶(제출서류) 시행규칙 별지 6, 7호 서식 - 시행규칙 제15조 제4항, 5항의 서류들

※ 제출서식은 기흥구 홈페이지(<https://www.giheunggu.go.kr/>)에서 다운로드 가능.
• 민원안내 >> 민원서식 >> 건축허가1과 >> 공동주택관리 민원서식

공동주택 관리업무 관련 타 기관 연락처

구분	관련 기관	전화 번호
공동주택관리 민원 상담, 관리 진단, 기술 자문 등	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	☎ 1600-7004
층간소음 측정, 피해 상담	층간소음아웃사이센터	☎ 1661-2642
약취로 인한 피해	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	☎ 044-201-7969
하자담보책임기간내 발생한 시공상 하자 피해	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	☎ 031-910-4200
개인정보보호법 및 침해신고 문의	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	(국번없이) ☎ 118

▶ 기흥구청 아파트관리팀

(1)건축허가1과 아파트관리팀
(신갈, 영덕, 구갈, 상갈, 보라, 기흥, 서농)
☎ 324-6490, 6491, 6492

(2)건축허가2과 아파트관리팀
(구성, 마북, 동백, 보정, 상하)
☎ 324-7930, 7931, 7932

▶ 경기도에서 하는 사업 (☎ 031-120)

- 시설공사 기술자문 무료서비스
- 공동주택관리 사전 자문 운영